

의안번호	2203381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4. 9. 19.
추계번호	24C3314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 신설에 따른 출자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각각 100억원, 2028년까지 5년간 총 300억원(연평균 60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출자 (안 제22조)	10,000	10,000	10,000	—	—	30,000	6,0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	계정관리기관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사업에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추가함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함)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계획¹⁾을 근거로 하여 연도별 출자금을 산정함
- 공단에 따르면 출자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 설립을 2024년 10월 말 예정하고 있어, 첫 출자연도를 2024년으로 총 3차례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, 추계기간은 그에 맞추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출자 근거 마련(안 제22조)

-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 - 공단이 제출한 출자계획에 따르면 2024년 100억원, 2025년 100억원, 2026년 100억원, 총 300억원을 자회사 자본금으로 출자할 예정으로 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이 300억원 발생하게 됨

[표 2] 연도별 출자계획

(단위: 억원)			
구분	2024	2025	2026
자본금 출자액	100	100	100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국민체육진흥공단)

- 참고로, 개정안은 안 제20조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출자금 회수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배당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12.5년으로 예상하고 있음

1) 2024년 100억원, 2025년 100억원, 2026년 100억원 출자 예정

[표 3] 연도별 출자금 회수계획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출자 연도	1차 연도	2차 연도	3차 연도	4차 연도	5차 연도	6차 연도	7차 연도	8차 연도	9차 연도	10차 연도	11차 연도	12차 연도
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	'31년	'32년	'33년	'34년	'35년	'36년
누적 출자액	100	200	300	-	-	-	-	-	-	-	-	-	-
누적지분율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
수입	0	1,730	3,613	3,776	3,937	4,098	4,258	4,341	4,341	4,384	4,428	4,472	4,517
지출	(4)	(1,728)	(3,587)	(3,742)	(3,896)	(4,051)	(4,025)	(4,299)	(4,299)	(4,342)	(4,386)	(4,429)	(4,474)
영업이익	(4)	2	26	34	41	47	53	42	42	42	43	43	43
당기순이익*	(4)	1	20	26	31	36	41	32	32	32	33	33	33
회수액**	-	-	17	23	28	32	37	29	29	29	30	30	30
(비율)	-	-	(5.67)	(7.67)	(9.33)	(10.67)	(12.33)	(9.67)	(9.67)	(9.67)	(10.00)	(10.00)	(10.00)
누적회수액	-	-	17	40	68	100	137	166	195	225	254	284	315
(비율)	-	-	(5.67)	(13.33)	(22.67)	(33.33)	(45.67)	(55.33)	(65.00)	(75.00)	(84.67)	(94.67)	(105.0)

* 당기순이익은 세후영업이익과 동일하다고 가정, 영업이익 중 법인세율(23.2%) 차감

** 당기순이익 전액 배당을 가정, 상법상 10%의 법정적립금(이익준비금)을 유보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(국민체육진흥공단)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